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
----------	----

2022. 9. 28.(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안치영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6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치영 의원)

가. 제안사유

-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확히 규정(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 명시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안 제13조)
- 운영세칙(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22.6.22.)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개정한 것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은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7개 시도 중 15개소 조례에 반영 완료(충청북도, 전라남도 미반영)
 - 본 조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과 의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는 시·도지사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 위원회의 구성 등)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는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위원회는 이를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내용적으로 적합함.
-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을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 함으로써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을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의”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도 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과 「<u>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u>」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u>」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충청북도내</u> -----.</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u>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u>”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u>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0조에 따른 <u>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u>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 (생략)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7조에 따른 -----

<삭 제>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p><u>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u></p> <p><u>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u></p> <p><u>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u></p> <p><u>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p> <p><u>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u><신 설></u></p>	<p><u>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u>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u>②</u>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③</u>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신 설></u></p>	<p><u>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u></p>

	<u>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신 설></u>	<u>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 제1항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수준 향상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 : 해당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관련 비용은 추정치로 계상
· 현 인건비 총액 중 국·도비(80%) : 137,022,236천원
· 종사자 인건비 기준 평균 인상률 : 1.98%(5년 평균)
* 18년(2.6%), 19년(2%), 20년(2.8%), 21년(0.9%), 22년(1.6%)
⇒ 인건비 1.98% 증액 시 차년도 국·도비 소요액 : 139,736,277천원
- 안 제9조 : 처우개선 위원회 참석 수당 지원(도비 100%)
· 산출내역 : 15명 × 130천원(기본·초과수당) × 2회(상·하반기) = 3,900천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역(국·도비)	
		지원내용	예산(천원)
계			139,739,177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및 지원	139,735,277
2	처우개선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3,900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37,026,136	139,739,177	142,505,934	145,327,475	148,204,882	712,803,604	
국 비	95,915,565	97,814,694	99,751,424	101,726,502	103,740,687	498,948,872	
도 비	41,110,571	41,924,483	42,754,510	43,600,973	44,464,195	213,854,732	
세 출	137,026,136	139,739,177	142,505,934	145,327,475	148,204,882	712,803,60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	137,022,236	139,735,277	142,502,034	145,323,575	148,200,982	712,784,104	
처우개선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지원 비용	-	-	-	-	-	-	
재원 조달	137,451,350	139,739,177	142,505,934	145,327,475	148,204,882	713,228,818	
의존 재원	소 계	95,915,565	97,814,694	99,751,424	101,726,502	103,740,687	498,948,872
	보조금(국비)	95,915,565	97,814,694	99,751,424	101,726,502	103,740,687	498,948,87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1,408,616	41,924,483	42,754,510	43,600,973	44,464,195	214,152,777
	지방세	41,110,571	41,924,483	42,754,510	43,600,973	44,464,195	213,854,732
	세외수입	-	-	-	-	-	-

※ 종사자 인건비 기준 평균 인상률 1.98% 적용